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재심사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74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재심사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2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5
나. 검토의견	5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5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재심사 기간 정비	7
3) 시료의 재검사 기간 정비	12
4) 부칙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2조의3, 제42조의4 및 제42조의10).

Ⅲ. 검토의견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재심사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개정안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심사,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현행 7일)로 연장하고, 인증기관의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현행 7일)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인증품의 시료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등이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검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현행 7일)로 연장하고,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현행 7일)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④ (생략)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u>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u>	⑤ ----- ----- <u>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u> -----.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u> 해당 신청인에	⑥ ----- ----- <u>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u>

현행	개정안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신설> ⑨ (생략)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④ (생략)	<u>정하는 바에 따라</u>-----.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⑤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u>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u>	음) ⑤ ----- ----- ----- -----, ----- ----- --유통업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료의 -----.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u>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
⑦ ~ ⑪ (생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신설>	⑫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⑫ (생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심사와 관련된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나. 검토의견

1) 제안 배경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상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처분청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스스로 처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간이한 방식의 구제절차로, 쟁송에 대한 부담 없이 국민의 손쉬운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행정청도 효율적으로 자신의 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¹⁾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²⁾

1) “행정기본법상 국민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법제처, 2024. 11.)

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 및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기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이와 동일한 취지로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정비 관련 개정안]

개 정 안	내 용	현 행 (하위법령)	개 정
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재심사 완료 후 7일	1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2개월	지체 없이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10일	30일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	14일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20일	행정기본법 적용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10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시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7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10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10일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3개월	행정기본법 적용

※ 자료: 관련 법령 및 개정안 내용 재구성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재심사 기간 정비

2007년 도입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도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항생제 미사용 사료를 급여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취급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연도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건)	5,833	6,189	6,509	6,900	7,239
농가수(호)	6,240	6,636	6,972	7,333	7,629
사육두수(천)	188,989	201,979	221,853	241,260	257,941
출하량(톤)	1,068,785	1,112,465	1,624,077	1,787,372	1,906,86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제출(2025. 4. 9.)

「축산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³⁾한 인증기관에서 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인증

3)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지정 권한이 위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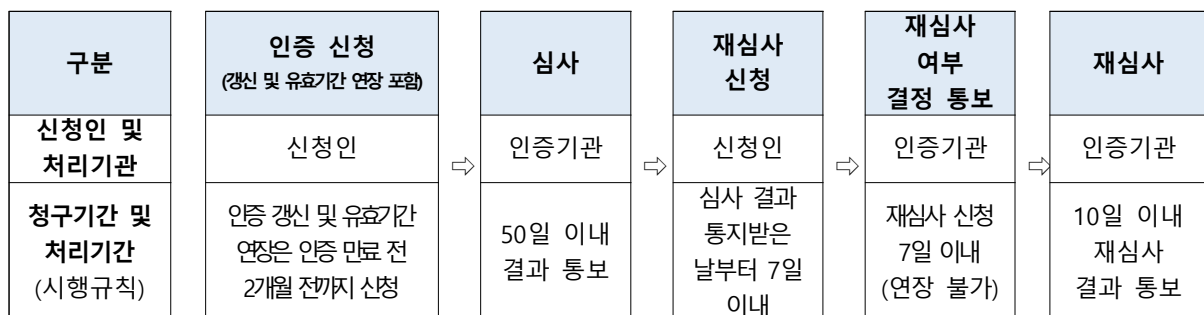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42조의3제5항 및 부령 제47조의7제1항).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인증사업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 내 생산하였지만 출하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42조의4).

갱신 및 연장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47조의10제1항 및 부령 제47조의10제1항).

인증기관은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부령 제47조의7제2항 및 제47조의10제2항),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법 제42조의3제7항, 제42조의4제6항 및 부령 별지 제55호 서식).

[심사·재심사 절차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제출(2025. 4. 9.)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재심사 관련 규정]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 3. (생략)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의7(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u>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u>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u>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u>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출하를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제47조의10(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u>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u>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u>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u>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인증기관의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또한, 개정안 제42조의3제9항 및 제42조의4제7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되,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할 것이나, 현재 1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을 적용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⁵⁾

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재검사 기간 정비

「축산법」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료의 검사를 포함하여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법 제42조의10).

조사 결과 중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부령 제47조의23제5항),

재검사를 요청받은 인증기관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부령 제47조의23제6항),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7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법 제41조의10제7항 및 부령 별지 제63호 서식).

[사후관리(재검사) 절차도]

구분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시료 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 신청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재검사
신청 및 처리기관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구기간 및 처리기간 (시행규칙)	정기조사(표본) 및 수시·특별조사	-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신청 7일 이내 (연장 불가)	7일 이내 재검사 결과 통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제출(2025. 4. 9.)

5)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7제1항 [별지 제55호서식]

[무항생제축산물 사후관리(시료 검사) 관련 규정]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②~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23(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민원·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의10제5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⑨~⑪ (생략) 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u>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u>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7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42조의10제12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되,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10일 연장 제외)에 통보해야 할 것이나, 현재 7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⁷⁾

4) 부칙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또는 재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 제42조의4 및 제42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 또는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 또는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이 법 시행 전 심사 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6)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7제1항 [별지 제63호서식]

문 의 처
02)6788-5414